

의안 번호	1389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9. 6.(목)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9. 8.(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9. 18.(월)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규정 변경 (안 제7조, 별표 2)
- 나. 「도로법」 제68조제4호의2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 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개정에 따른 점용료 계산 변경(별표 1)

### 4. 근거법규

- 가. 「도로법」 제68조제4호의2
- 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100분의 10으로 수정하고, 도로법 제68조제4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및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